

계약규정 [2008. 2. 19 규정 제394호]

재무처 02-6311-2228

개정 2008. 3. 20 규정 제397호
 2009. 2. 6 규정 제447호
 2009. 12. 14 규정 제509호
 2010. 12. 23 규정 제578호
 2011. 1. 1 규정 제584호
 2012. 1. 11 규정 제631호
 2012. 9. 7 규정 제669호
 2014. 2. 11 규정 제736호
 2014. 4. 3 규정 제746호
 2014. 6. 5 규정 제750호
 2015. 2. 9 규정 제810호
 2015. 10. 19 규정 제859호
 2016. 9. 26 규정 제90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도시철도공사”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도시철도공사가 자연인 또는 법인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 도시철도공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법령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며, 일반회계 및 예산에 관하여는 회계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추정가격”이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의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개정 2011.1.1)
2. “예정가격”이란 입찰이나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하여 갖춰 두는 가액(價額)으로서 제9조에 따라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개정 2011.1.1)
3. “고시금액”이란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입찰 적용대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08.3.20, 2011.1.1., 2015.2.9)
4. “공사이행보증서”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낼 것을 보증하는 증서를 말한다.(개정 2011.1.1)

제5조(계약의 원칙)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

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이 규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2(청렴서약제) ①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59조에 따른 감독, 제60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이조 신설 2014.4.3]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위탁) ①사장은 계약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계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다른 투자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사무의 위탁에 있어서 위탁대상 및 계약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장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산에 계상(計上)된 금액이나 또는 해당 목적물의 규격서·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도시철도공사가 공급하는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을 추정가격으로 한다.(개정 2011.1.1)

1. 단가계약의 경우 : 제조·구매·수리·보수·복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이하 “제조·구매·복구 등”이라 한다)의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개정 2011.1.1)
2.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개정 2011.1.1)

- 가. 해당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개월 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개월 동안의 수량과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개정 2011.1.1)
- 나. 해당 회계연도 또는 그 직후 12개월 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개정 2011.1.1)

3. 물품이나 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계약 및 총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개정 2011.1.1)

- 가.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개정 2011.1.1)
- 나.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개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개정 2011.1.1)

4. 조달하려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 가능한 금액(개정 2011.1.1)

제8조(예정가격 등의 비치)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2011.1.1. 12.1.11, 15.10.19.)

- 1. 서면에 의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 작성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갖추어둘 것(신설 12.1.11)
-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 작성된 예정가격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할 것(신설 12.1.11)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6조제1항제4호·제6호의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제3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제76조 또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9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6., 2011.1.1., 16.9.26.)

③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을 입찰할 때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예정가격(이하 "개산예정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갖추어두거나 입력하여야 하며 개산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12.1.11, 15.10.19.)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①예정가격은 계약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복구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1.1.1)

②공사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

(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의 경우와 물품의 제조·구매·복구 등의 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의하여 해당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구매·복구 등(이하 "장기물품제조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예산상의 총 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내규에서 정하는 거래실례가격(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에서의 거래실례가격)(개정 2011.1.1)
2.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계산한다.(개정 2011.1.1)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 단가로서 사장이 인정한 가격 (개정 15.10.19.)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개정 2011.1.1)

②삭제 (15.10.19.)

③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신설 2012.9.7, 2015.2.9)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예정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11.1.1, 2012.9.7)

제3장 계약의 방법

제11조(계약의 방법)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 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12조(경쟁방법)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은 입찰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산(動産)의 매각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규정에 따른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부칠 수 있다.(개정 2011.1.1)

제13조(입찰의 성립)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하여야 성립한다. (15.10.19.)

[조 제목 개정 15.10.19.]

제14조(입찰의 참가자격)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개정 2011.1.1., 15.10.19.)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그 밖에 내규에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1., 15.10.19.)

[조제목 개정 2011.1.1]

제15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15.10.19., 16.9.26.)

1. 삭제 (2011.1.1)
2. 삭제 (2011.1.1)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계약이행의 성실도 및 사회적 신인도 등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으로 심사하거나 그 기준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달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8.3.20, 2011.1.1, 단서 신설 2011.1.1., 2015.2.9)

③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1.1.12.1.11)

1.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2.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3. 그 밖에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사항

④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용역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

정한다.(개정 2011.1.1., 15.10.19.)

⑤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신설 2011.1.1., 16.9.26.)

제16조(공사의 입찰)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설계서, 공종별(工種別)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그 밖에 내규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설계서의 경우에는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8.3.20, 2011.1.1)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45조에 따라 제안서(설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를 열람시키지 아니하고 교부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1)

③ 삭제 (2011.1.1)

③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에 미리 현장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현장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1)

④제3항에 따른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해당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起算)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제4항에 따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1.1.1)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3일

⑤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⑥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입찰시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적게 하되,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입찰금액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단서 신설 2011.1.1. 2015.2.9)

1.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2. 제43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 제안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제45조에 따라 설계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 (개정

16.9.26.)

⑦ 제6항에 따른 산출내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1. 물량내역서가 열람·교부된 공사

가.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공사: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만을 적는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되, 발주기관이 수정을 허용한 부분은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12.1.11, 16.9.26.)

2. 물량내역서가 열람·교부되지 않은 공사: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여기에 단가를 적는다.(개정 2008.3.20)

⑨ 삭제 (2011.1.1)

⑧ 장기계속공사(「회계규정」 제136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⑨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7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총액으로 입찰을 실시하되,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①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을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 두어야 하며, 입찰공고 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11.1.1)

②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③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물품과 용역을 통합발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칠 수 있다.(개정 2011.1.1)

④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 및 제45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 중에서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입찰공고 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⑤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은 내규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입찰서로 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을 표시하고, 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단가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⑥ 장기계속계약(「회계규정」 제136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제조 등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총제조 물량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제18조(다량물품의 입찰) ① 다량의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일반입찰은 그 매각수량의 범위에서

수요자의 매수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1.1., 15.10.19.)

②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의 일반입찰은 그 수요수량의 범위에서 공급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1.1., 15.10.19.)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희망수량입찰 대상의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개정 2011.1.1., 15.10.19.)

제19조(2단계 입찰)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내규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은 제외한다)에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을 작성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1.1.1)

②제1항의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게만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③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내규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은 제외한다)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과 가격입찰 또는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④사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찰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⑤제3항에 따라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하여금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1.1)

[조제목 개정 2011.1.1]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1.1.1., 15.10.19.)

②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15.10.19.)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개정 2011.1.1.)

제21조(제한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제11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09.12.14, 10.12.23, 2015.2.9., 16.9.26.)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개정 10.12.23, 2011.1.1)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그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개정 10.12.23, 2011.1.1)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그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개정 10.12.23, 2011.1.1)
4.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납품능력(개정 10.12.23)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그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개정 10.12.23, 2011.1.1)
6. 추정가격이 내규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7. 제22조에 따른 제한방법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기준(개정 10.12.23)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공고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개정 10.12.23, 2011.1.1., 16.9.26.)
9.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
10. 다음 각 목의 인증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납품능력(신설 2011.1.1)
 -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물품
 - 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 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2015.2.9.)
 - 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 마.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을 활용한 물품(신설 14.2.11)
-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 하여야 한다.(개정 10.12.23, 2011.1.1., 15.10.19.)
- ③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입찰로서 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내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찰참가자격자에게 제37조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통지일로 보

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개정 10.12.23, 2011.1.1.)

[조 제목 개정 15.10.19.]

제22조(공사의 성질별 · 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 ①사장은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입찰기준을 정하고 이를 미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하여 입찰참가자격자로 하여금 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5.10.19.)

②사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유형별·등급별로 입찰참가자격자를 선정하여 등록하고 공사입찰시마다 해당 입찰참가자격자에게 제37조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1.1)

③사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제한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0, 2011.1.1., 2015.2.9., 15.10.19.)

④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입찰참가자격자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1.1.1)

제23조(지명입찰에 의한 계약)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단서에 따른 지명입찰에 부칠 수 있다.(개정 10.12.23, 15.10.19.)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 기술 · 자재 · 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전기공사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개정 2011.1.1., 16.9.26.)
3.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4. 예정임차료의 연액(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을 연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이나 물품을 임차하는 경우(개정 2011.1.1)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개정 2011.1.1)
6.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의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개정 10.12.23, 2011.1.1)
7. 제11조 단서와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개정 2009.2.6, 10.12.23, 2011.1.1)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개정 10.12.23, 2011.1.1., 2015.2.9)

9. 제7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개정 10.12.23, 2011.1.1)

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 · 공고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 · 구매하는 경우(개정 10.12.23, 2011.1.1)

11.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을 활용한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신설 14.2.11)

[조제목 개정 2011.1.1]

제24조(지명입찰 대상자의 지명)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3조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 참가신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일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37조 각 호의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입찰공고를 갈음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통지일로 보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개정 2011.1.1)

③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대상자를 지명하려는 경우에는 내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통지하고 입찰참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조 제목 개정 15.10.19.]

제25조(유사물품의 복수입찰)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품질 · 성능 또는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 중에서 품질 · 성능 또는 효율 등이 일정수준 이상인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복수경쟁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종류의 물품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개정 2011.1.1.)

[조 제목 개정 15.10.19.]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개정 10.12.23)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삭제 (2011.1.1)

2.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내규에서 정하는 재난복구 등의 경우 (개정 2011.1.1)

3-2. 삭제 (2011.1.1)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개정 2011.1.1)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가.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개정 10.12.23, 2011.1.1, 2015.2.9)
 - 나.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개정 2011.1.1)
 - 다. 마감공사에 대하여 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개정 2011.1.1)
 -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개정 2011.1.1)
 - 마. 특허공법,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개정 2011.1.1, 2014.2.11., 2015.2.9., 15.10.19.)
 -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개정 2011.1.1)
 -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응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 아.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개정 2011.1.1)
 - 자. 삭제 (2011.1.1)
 - 차.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개정 2011.1.1)
 - 차.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제99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1.1.1)
 - 카.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개정 2011.1.1)
 - 타.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

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개정 2011.1.1)

파.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개정 2011.1.1)

하.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으로서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 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문화재 발굴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신설 2011.1.1., 개정 2015.2.9., 16.9.26.)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개정 10.12.23, 2011.1.1., 16.9.26.)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 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6천만 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신설 16.9.26.)

나.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신설 16.9.26.)

다.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신설 16.9.26.)

라.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신설 16.9.26.)

마.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신설 16.9.26.)

바. 추정가격이 3천만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신설 16.9.26.)

6.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개정 2011.1.1)

가. 삭제 (2011.1.1)

나. 삭제 (2011.1.1)

- 가.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개정 2011.1.1)
-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개정 2011.1.1)
- 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 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개정 2011.1.1)
-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 [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하며, 주무부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3년을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1.1.1, 2014.2.11)
 -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받은 제품
 -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개정 2015.2.9.)
 -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공동상표의 물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신설 12.1.11)
 - 7)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하기로 협약한 제품 (신설 15.10.19.)
- 7.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및 특정물품 생산자 등과 계약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개정 2011.1.1)
 - 가.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도시철도공사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개정 2011.1.1)
 - 나. 삭제 (2011.1.1)
 - 나.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개정 2011.1.1)

라. 삭 제 (2011.1.1)

7의2.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이호 신설 2014.2.11]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 · 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개정 15.10.19.)

가. 물품의 가공 · 하역 · 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할 때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1.1.1., 15.10.19.)

나. 삭 제 (2011.1.1)

다. 삭 제 (2014.2.11)

라. 삭 제 (2014.2.11)

마. 삭 제 (2014.2.11)

바. 삭 제 (2011.1.1)

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개정 2011.1.1)

사. 시험지와 비밀문서의 인쇄 등 도시철도공사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설 2011.1.1)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7호나목 및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12.1.11, 14.2.11)

1.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
2.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생산 및 용역의 직접수행 가능 여부(개정 12.1.11)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개정 2011.1.1)

②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개정 2011.1.1)

제28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개정 2011.1.1)

②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개정 2011.1.1)

제29조(분할수의계약) 제26조제1항제6호가목, 제27조 및 제28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가격이나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에서 수인(數人)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개정 2011.1.1)

제30조(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의 계약금액) 계속공사(제26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를 말한다)의 경우 그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2011.1.1)

제31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개정 2009.2.6, 2011.1.1 12.1.11)

1. 제26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신설 12.1.11)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신설 12.1.11, 개정 2015.2.9)
3. 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신설 12.1.11)

②제1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 사장이 정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1.1., 16.9.26.)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견적서에 적힌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 들지 아

니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11.1.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내규로 정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1.1)

⑤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11.1.1 12.1.11, 15.2.9)

제32조(수의계약내역의 공개) ① 사장 및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2.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감리·감독·검사의 현황
4. 대가의 지급현황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도시철도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5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이조 전부개정 2014.4.3]

제33조(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4조제1항은 수의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제34조(입찰공고)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5.10.19.)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도시철도공사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15.10.19.)

③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를 한 후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다시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 내용에 관련 법령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고기간의 남은 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加算)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제35조(입찰참가의 통지)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3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당 입찰참가자격자에게 제37조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개정 2011.1.1)

제36조(입찰공고의 시기)①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②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③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 제4조제3호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0일
4. 추정가격이 제4조제3호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40일(개정 2011.1.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개정 2011.1.1., 16.9.26.)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 입찰의 경우 (신설 16.9.26.)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설 16.9.26.)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신설 16.9.26.)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설 16.9.26.)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설 16.9.26.)

⑤제19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및 제45조와 제46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격·기술 입찰서 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2015.2.9)

1.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및 제45조와 제46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15.10.19., 16.9.26.)

1. (삭제 16.9.26.)
2. (삭제 16.9.26.)

제37조(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개정 2011.1.1)
3.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 · 일시 · 참가자격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4. 제45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 · 일시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5.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수입조치에 관한 사항
8. 낙찰자결정방법(제43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통보예정일을 포함한다)
9. 계약의 이행예정기간
10. 계약하려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개정 2011.1.1)
11. 제40조제4항에 따른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개정 2011.1.1)
12.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 교부장소와 교부비용(개정 2011.1.1)
13.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14.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15.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개정 2011.1.1)
16. 제83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제83조제3항에 따른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자격제한사항 및 제83조제6항에 따른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포함한다)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개정 2011.1.1., 15.10.19.)
17. 제89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1.1.1)
18.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 방법(신설 12.1.11)
19.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1.1.1)

제38조(입찰보증금)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 15.10.19.)

②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 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15.10.19.)

③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이를 내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개정 2011.1.1)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개정 2011.1.1)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개정 2011.1.1)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개정 2008.3.20, 2011.1.1)
 -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2015.2.9.)
 -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 라.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 마.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 사.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 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 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차.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카.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 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 파.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 하. 「정보통신공사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 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 너.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신설 12.1.11)
 - 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신설 2012.9.7)
 - 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신설 2012.9.7.)
 - 머.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른 폐기물처리공제조합(신설 2015.2.9.)
 - 버.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0조2에 따른 공제조합 (신설 15.10.19.)
5. 제1호에 규정된 은행 및 외국은행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개정 2011.1.1)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개정 2011.1.1)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개정 2011.1.1)

④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개정 2011.1.1)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개정 2011.1.1)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개정 2011.1.1)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개정 2011.1.1)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개정 2011.1.1)
 -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다.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 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 정공제회
 - 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른 시·도의 연구원
 - 자.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신설 2014.2.11)
 - 카.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신설 2014.2.11)
 - 타.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 및 지방의회발전연구원(신설 2014.2.11)
 6.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골재채취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 등의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한 법인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개정 2008.3.20, 2011.1.1, 2015.2.9)
 - 6의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신설 12.1.11, 개정 2015.2.9)
 7. 그 밖에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⑤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입찰보증금의 수입조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

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제39조(입찰보증금의 수입조치)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도시철도공사에 수입조치 하여야 한다.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8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수입조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제38조제3항 각호의 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보증기관 등에 통지하고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도시철도공사 소유 유가증권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③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8조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수입조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해당 낙찰자에게 통지하고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제40조(입찰서의 제출 · 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

③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사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4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이나, 그 밖에 내규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다만, 제83조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적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1. 2015.2.9)

제41조(개찰과 낙찰선언)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으면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참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1.1)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③제4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개찰과 낙찰선언을 한다.(개정 2011.1.1)

[조제목 개정 2011.1.1]

제42조(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도시철도공사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 있

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 입찰가격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따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5.10.19.)

[조 제목 개정 15.10.19.]

제43조(지출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개정 2011.1.1., 15.10.19.)

1.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43조의2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개정 2011.1.1., 16.9.26.)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인 물품입찰의 경우로서 물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납품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데에 짧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 등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20., 2011.1.1., 15.10.19.)
 3. 제19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에 따라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거나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입찰자가 1인인 때에는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16.9.26.)
- ②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개정 09.12.14, 2011.1.1., 2015.2.9.)

[조 제목 개정 15.10.19.]

제43조의2(도시철도공사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철도공사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
 2.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 또는 용역
 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재 수리
-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은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공사

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합산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가장 높은 점수인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행정자치부예규 『종합평가낙찰자결정기준』를 준용한다.

[이조 신설 16.9.26.]

제44조 (삭제 16.9.26.)

제45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계약과 내규에서 정하는 공사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도시철도공사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1.1.1 12.1.11)

② 제1항에서 “추정금액”이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신설 12.1.11)

③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④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1.1.1)

⑤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 「건축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설계 등의 용역업자를 공동으로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2.9.)

⑥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 ·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개정 2011.1.1)

⑦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1.1 12.1.11)

⑧제1항의 평가를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장이 정한 세부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르며, 사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⑨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1.1.1)

⑩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⑪위원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다른 공기업 직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12.1.11)

⑫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의 경우 최종 계약 체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일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계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1.1.1)

⑬제12항에 따른 설계서 작성 보상비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43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8.3.20., 2015.2.9)

제46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술성·창작성이 필요하거나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5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1.1.1)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높거나 뛰어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개정 2011.1.1., 2015.2.9)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개정 2011.1.1)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개정 2011.1.1)
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개정 2011.1.1)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개정 2011.1.1)
6.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개정 2011.1.1)
7.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개정 2011.1.1)
8. 예술성·창작성 등이 수반되는 조형물을 설계하여 제작하거나 조형물을 설계하여 제작·설치하는 사업(개정 2011.1.1.)
9.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간정보사업 (신설 16.9.26)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사장이 정하는 제안서 평가방법 및 협상절차 등에 따라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제47조(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도 불구하고 가격에 따라 품질의 질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경우 등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

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08.3.20, 2011.1.1., 2015.2.9)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입찰 전에 결정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제48조(다량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이상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로 매각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개정 2011.1.1)

제49조(다량물품을 제조·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제조·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개정 2011.1.1)

제50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1. 제18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입찰인 경우 : 입찰 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개정 2011.1.1., 15.10.19.)

2.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개정 2011.1.1)

3.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합산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가장 높은 점수인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개정 2011.1.1., 16.9.26.)

4.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개정 2011.1.1., 16.9.26.)

5. 제43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개정 2011.1.1., 16.9.26.)

②제1항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1.1)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5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0.12.23, 2011.1.1., 2014.4.3., 15.10.19.)

②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천재지변·전산장애 등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14.4.3., 2015.2.9)

③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개정 2011.1.1, 2014.4.3)

제52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5.10.19.)

1.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개정 2011.1.1)
2. 경매에 부치는 경우
3. 물품을 매각할 때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내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개정 2011.1.1)
4.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계약의 성질상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개정 2011.1.1)

제53조(계약보증금)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도시철도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당해 계약보증금을 해당 도시철도공사에 수입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시철도공사에 수입 조치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15.10.19.)

제54조(계약의 이행보증)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1. 삭제 (2011.1.1)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 납부하는 방법(개정 2011.1.1)

2.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말한다)이상을 낼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개정 2011.1.1)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1.1)

1. 삭제 (2011.1.1)

2. 삭제 (2011.1.1)

3. 삭제 (2011.1.1)

4. 삭제 (2011.1.1)

③사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1.1.1., 15.10.19.)

④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내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11.1.1)

⑤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할 때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내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⑥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체결 시 덧붙여 적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계약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원래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끝난 연차별계약금액의 100분의 10(공사계약의 경우로서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말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제55조(계약보증금 납부방법) ①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제38조제3항 각 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내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제38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1.1)

제56조(계약보증금 면제) ①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1)

1. 제38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의2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개정 2011.1.1 12.1.11)
2. 계약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이미 도입된 외자(外資)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급자가 아니면 그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개정 2011.1.1)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제53조제2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수입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이 조에서 “확약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약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1.1)

제57조(계약보증금의 수입조치)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54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제53조제2항에 따라 도시철도공사에 수입조치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②장기계속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제74조제3항 후단과 같은조 제4항에 따른 2차 이후의 공사 또는 제조 등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1.1.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도시철도공사에 수입조치 할 때 그 계약보증금은 기성(既成)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相計)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5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1., 15.10.19.)

④계약보증금을 수입조치할 경우에는 제39조를 준용한다.(개정 2011.1.1.)

⑤규정 제7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공사에 귀속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2.9.)

제58조(손해보험의 가입)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1.1)

②사장은 제1항에 따른 손해보험가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1.1.1)

제59조(감독)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절하게 이행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직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5.10.19.)

1.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과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등 의무적으로 책임 감리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약(개정 2011.1.1., 2015.2.9)

2.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본문에 규정된 감독을 할 수 없는 도급계약(개정 2011.1.1)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되어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직원의 수(제1항 단서에 따른 계약 중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정해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監理員)의 수를 말한다)을 그 배치기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11.1.1., 2015.2.9)

③제2항에 따라 추가로 드는 감독비용 또는 감리비용은 해당 공사예산 중 낙찰차액(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차액을 말한다)으로 충당할 수 있다.(개정 2011.1.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0조(검사)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5.10.19.)

1.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책임감리 대상공사 (개정 2015.2.9.)

2. 제질 · 성능 또는 규격 등의 검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②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품질관리능력을 인증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4.3)

③제1항에 따른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사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검증하는 기간은 제외한다.(개정 2011.1.1, 2014.4.3, 2014.6.5.)

1. 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검증하는 경우 (신설 2014.6.5.)

2.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신설 2014.6.5.)

3. 해외 수입 철도용품인 경우 별도의 검정기관을 통해 직접 선정하여 검수하는 경우 (신설 2014.6.5.)

④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조사설계용역계약인 경우에는 그 용역계약의 상대자가 조사설계 대상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를 함께 검사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2014.4.3)

⑤기본설계(타당성 조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이행검사를 할 때에 실시설계대상사업의 총사업비 산정이 적정한지를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를 비교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의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2014.4.3)

⑥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2014.4.3)

⑦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제3항에 따른 기간을 계산한다.(개정 2011.1.1, 2014.4.3)

⑧제62조제4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제59조에 따른 감독을 행하는 자가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2014.4.3)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 3천만 원미만의 계약 또는 매각계약,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등 검사조서의 작성이 실질상 불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4.3)

⑩물품구매계약 또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 등의 검사에 드는 비용과 검사로 인한 변형, 파손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신설 2014.4.3)

제61조(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 제59조에 따른 감독의 직무와 제60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검사에서 감독을 하는 자 외의 자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개정 2011.1.1)
2.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 등 해당 계약의 이행 후 지체 없이 검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개정 2011.1.1)
3. 계약금액이 3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또는 공사계약의 경우
4. 제5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계약의 경우(개정 2011.1.1)
5.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기성검사를 갈음하는 경우(개정 2011.1.1)

제62조(대가의 지급)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규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급을 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의한 대가는 제60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1.1.1., 16.9.26.)

③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④제1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既納)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및 이행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

⑤제4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에는 제60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대가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완료일부 5일 이내에 검사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16.9.26.)

⑥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5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1)

⑦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기한 내에 대가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⑧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신설 12.1.11)

제6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대금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62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도시철도공사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체결인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62조제7항에 따라 다음 계산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 해당 미지급금액 ×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사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제64조(대가의 선납)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산의 매각, 임대, 용역의 제공 그 밖에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대가를 미리 내

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5.10.19.)

제65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내규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1., 15.10.19.)

②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0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하자담보가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1.1.1)

③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연차계약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전체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정한다.(개정 21011.1.1, 15.10.19.)

[조제목 개정 2011.1.1]

제66조(하자검사)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5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②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가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 만원 이하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1.1.1)

제67조(하자보수보증금)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5조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4항제1호 제5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1.1., 15.10.19.)

② 삭제 (2011.1.1)

②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내규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1.1)

③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제6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고 이를 제65조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의 존속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15.10.19.)

④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계약별로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목적물에 대하여 제60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하고 나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⑤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및 도시철도공사 수입조치의 경우에는 제38조 제3항·제5항 및 제39조를 준용한다.(개정 2011.1.1)

제67조의2(하자보수이행절차) ①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5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제67조의3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도시철도공사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조 신설 2011.1.1]

제67조의3(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 ①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목적물의 설계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한다.

②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 등이 임회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조 신설 2011.1.1]

제6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6조에 따른 하자검사 결과 하자가 발생한 경우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용 잔액은 도시철도공사에 수입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②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에 관한 절차는 내규로 정한다.(개정 2011.1.1)

제69조(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개정 2009.2.6))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 물품 · 용역 그 밖에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

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개정 2011.1.1., 15.10.19.)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와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와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결시 덧붙여 적은 총공사와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개정 2011.1.1., 15.10.19.)

1.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하고,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직전 조정 기준 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과 제7항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하여 내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개정 2011.1.1., 15.10.19.)

2.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내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개정 2011.1.1)

③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동일한 계약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경우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제2항제2호의 방법을 원하여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외에는 같은 항 제1호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2014.2.11)

④「회계규정」 제50조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증가액에서 내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개정 2011.1.1)

⑤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최고판매가격이 고시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제2항을 적용해서는 물품을 조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에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제2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1.1.1)

⑥제2항을 적용할 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1.1.1)

⑦제2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 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일 때에는 그 자재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개정 2011.1.1 12.1.11)

⑧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신설 2009.2.6, 개정 2011.1.1)

제7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개정 2011.1.1)

②입찰참가자가 제16조제7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직접 작성한 부분(제16조제7항제1호 나목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수정을 허용하였으나 입찰참가자가 수정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에 누락·오류 등이 있어 계약내용을 변경하더라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개정 2011.1.12.1.11)

③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 조정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이 원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1.1)

④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1.1.1)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 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개정 2011.1.1)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도시철도공사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1)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낙찰률)] × 50/100

⑤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도시철도공사의 설계와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그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개정 2011.1.1)

⑥제5항의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1.1., 2015.2.9)

⑦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여 산출하되 내규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1.1.1)

⑧제조·용역 등의 계약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11.1.1)

제71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69조와 제70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한다.(개정 2011.1.1)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70조제7항을 준용한다.(개정 2011.1.1)

제72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또는 임차·운송·보관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 있어서는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이라도 당해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효력이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그 예산배정 이후에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조제목 개정 2011.1.1]

제73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0, 2011.1.1., 2015.2.9., 15.10.19.)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개정 2011.1.1)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 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개정 2011.1.1)
3.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개정 2011.1.1., 2015.2.9.)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신설 2015.2.9.)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신설 2015.2.9.)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5.2.9.)

③제1항 각 호의 공사의 경우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5.2.9.)

제74조(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 계약)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임차·운송·보관 또는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등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제1항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1.1.1)

1. 운송·보관·시험·조사·연구·측량·시설관리 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2.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계약
3. 장비,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계약 (개정 15.10.19.)

③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 공사 금액을 덧붙여 적고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덧붙여 적은 총 공사금액(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 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④장기물품제조 등과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구축사업과 함께 해당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을 포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계약체결방법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11.1.1., 15.10.19.)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차수별 계약금액은 총 공사·총제조 등의 계약단가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11.1.1)

⑥「회계규정」 제136조에 따른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에서는 총 공사와 연차별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조제목 개정 2011.1.1]

제74조의2(단년도 차수계약)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같은 회계연도 내에 전체 예산의 확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설계서·규격서 등이 미리 확정된 경우에는 총액으로 입찰하여 낙찰된 자와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시기별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시기별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낙찰된 금액을 계약서에 덧붙여 적되, 예산의 범위에서 1차 계약을 체결하고 2차 이후의 계약은 덧붙여 적은 금액에서 1차 계약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이조 신설 2011.1.1]

제75조(단가계약)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수리·보수·복구·가

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미리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의 제조·구매·수리·가공
2. 시설물의 보수·복구
3.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4. 그 밖에 공급·사용·임차·매매 등의 계약

③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 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 기간 등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④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80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한 물품이거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이미 단가계약을 체결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제76조(개산계약)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계약으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2. 시험·조사·연구용역의 계약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과의 관계 법령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등의 계약 (개정 15.10.19.)

②사장은 제1항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 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제77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대상)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계약을 개산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개산계약은 다음 각 호의 공사 또는 용역을 대상으로 하되,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의 재해복구사업으로서 개산가격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외의 공사는 6억원) 미만인 공사 또는 2억원 미만인 용역으로 한정한다.(개정 2011.1.1)

1. 도로공사
2. 하천공사(석축, 옹벽, 호안블럭, 전석쌓기 및 제방축조 등을 포함한다)

3. 상하수도공사(간이상수도, 관로교체 등을 포함한다)(개정 2011.1.1)

4. 그 밖에 영 제82조제5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복구공사 (개정 2008.3.20, 2011.1.1., 2015.2.9)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사와 관련된 설계·감리 등의 용역(개정 2011.1.1)

제78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시 입찰방법)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77조에 따른 개산계약에서 각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감리와 시공은 설계 계약 후 7일 이내에 입찰에 부친다. (개정 2011.1.1)

제79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의 낙찰자 결정방법)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77조에 따른 개산계약의 입찰에서는 개산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개정 2011.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제4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0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이행방법)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긴급한 재해복구 공사의 개산계약을 이행할 때 해당 공사의 설계 등 용역 계약상대자에게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실시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1.1)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 시공 계약상대자에게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공사를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1.1)

③제2항에 따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공사를 우선 시공하게 하는 경우 시공 계약상대자는 그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공사에 투입되는 자재·장비 등의 수량 및 규격·품질 등에 대하여 그 공사의 설계자 및 설계용역의 검사자·감독자와 협의한 후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1.1)

제81조(개산계약의 정산)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개산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 물량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확정된 금액에 입찰당시의 낙찰율(개산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개산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확정·정산하여야 한다.

제82조(종합계약)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등과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함께 종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사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약의 체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합계약의 체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1.1.1)

제83조(공동계약)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의 계약에 있어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계약상대

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15.10.19.)

②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이행하게 하거나 분담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도급유형,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 등 공동계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개정 2011.1.1,2014.2.11)

③사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상 공동계약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공동계약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4.2.11)

④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분담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분담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2014.2.11)

⑤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참가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4.2.11)

⑥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으로 지역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2.11)

⑦제6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해당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한다.(개정 2011.1.1., 2014.2.11., 15.10.19.)

⑧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식기반사업 중 여러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복합 사업에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2014.2.11)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개정 2014.02.11., 15.10.19.)

제84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 원가검토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1.1.1)

②사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③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10조와 제2항에 따른 기준 등에 따라 원가검토를 하여 정산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제85조(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계약할 때 계약목적물의 특성 · 규모 및 이행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와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1.1.1., 2015.2.9)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89조의2제2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3.20, 2011.1.1., 2015.2.9)

제86조(지연배상금)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 · 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 · 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내규에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0.12.23, 2011.1.1., 15.10.19.)

②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 ·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개정 10.12.23, 2011.1.1)

③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개정 10.12.23, 2011.1.1)

[조제목 개정 10.12.23)

제87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4.4.3)

1. 제53조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도시철도공사에 수입조치하는 경우(개정 2014.4.3)
2. 제86조제1항에 따라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 ·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 · 향응 제공을 하는 등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개정 2014.4.3)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거나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을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4.4.3)
7.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개정 2014.4.3)
 - ②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4.3., 2015.2.9)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신설 2014.4.3)
 2.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도시철도공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신설 2014.4.3)
 - ③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개정 2014.4.3)
 - ④ 제86조제1항에 따라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지 않는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잔여계약 이행 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조 전부 개정 2011.1.1]

제87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제외 사유 등) 제87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계약의 이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도시철도공사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조 신설 2014.4.3]

제8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사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개정 2014.2.11., 2014.4.3., 15.10.19.)

- ②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

용한 견적서 제출자의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실(고용계약, 하도급 계약 등을 체결한 자의 행위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 이행을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후 지체 없이 제99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1.1.1., 2014.4.3., 16.9.26.)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개정 2014.4.3)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개정 15.10.19.)
4.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5.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제43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 또는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83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개정 2014.4.3., 16.9.26.)
7. 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개정 2014.4.3)
8. 입찰(제31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계약에 관한 서류(제40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서류를 제출한 자
9.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10.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계약담당자,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가 위임·위탁되는 경우 그 계약 사무처리와 관련되어 위원회 등이 설치된 경우 그 위원회 등의 위원, 제99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제45조제9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개정 15.10.19., 16.9.26.)

11.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제4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은 제외한다.)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2.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3. 감독 또는 검사 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4. 정당한 이유 없이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15. 제95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6.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17.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있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제4항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한 자 (개정 2015.2.9.)
18.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사기로 도시철도공사에 손해를 끼친 자
19.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누출될 경우 도시철도공사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20.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계약 중 타당성조사 용역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 예측 등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개정 2015.2.9.)
21. 제43조의2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자가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평가를 포기한 자 (개정 16.9.26.)

③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내규로 정한다.(개정 2011.1.1)

④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제2항을 적용한다.(개정 2011.1.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발생시킨 조합원에 대해서도 제2항을 적용한다. 다만, 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

해당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1)

⑥사장은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2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지정정보 처리장치 및 도시철도공사경영정보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신설 2009.2.6)

1. 업체(상호)명·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등)·주민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관계 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 번호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⑦사장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제한기간에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⑧삭제(15.10.19.)

⑨사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 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⑩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1.1) 다만,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 해당 장기계속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조항 신설 2014.2.11., 15.10.19.)

⑪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신설 15.10.19.)

⑫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15.10.19.)

⑬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통보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개정 15.10.19.)

제88조의2(과징금) ① 사장은 제88조 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신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88조제2항제3호·제4호,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제13호·제16호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 나. 국내외 경제 사정의 악화 등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로 인한 경우
- 다. 발주자에 의하여 계약의 주요내용이 변경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자료의 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
- 라. 공동계약자나 하수급인 등 관련 업체에도 위반행위와 관련한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경우
- 마. 입찰의 공정성과 계약이행의 적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며 다시 위반행위를 할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신설 15.10.19.)

2.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하지 아니 하는 경우로서 입찰자가 2인 미만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15.10.19.)

-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법 제3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부과절차,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92조의2, 제92조의3, 제92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사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⑤ 사장이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도시철도공사의 수입으로 한다.

[이조 신설 2014.4.3]

제6장 대형공사계약

제89조(적용대상 등) 대형공사계약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과 특정 공사의 계약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바에 따르되,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의 다른 장에 규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1.1.1)

제90조(정의) ①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1)

- 1. "대형공사"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말한다.(개정 2011.1.1)
- 2. "특정공사"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사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말한다.(개정 2011.1.1)
- 3. "대안"이란 도시철도공사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없이 도시철도공사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해당 실시설계서상의 가격이 도시철도공사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도시철도공사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공기단축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도시철도공사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보다 단축된 것에 한정한다)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한다.(개정 2011.1.1)

4. "대안입찰"이란 원안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제3호의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을 말한다.(개정 2011.1.1)

5. "일괄입찰"이란 도시철도공사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와 그 밖에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이하 "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을 말한다.(개정 2011.1.1)

6. "기본설계입찰"이란 일괄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실시설계에 앞서 기본설계와 그에 따른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개정 2011.1.1)

7. "입찰안내서"란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해당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자세히 알아야 하는 공사의 범위·규모, 설계·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와 그 밖에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 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개정 2011.1.1)

8. "실시설계서"란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서에 부수되는 도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정 2011.1.1., 15.10.19.)

9."계속비대형공사"란 공사비가 계속비 예산으로 반영된 대형공사를 말한다.(개정 2011.1.1)

10. "일반대형공사"란 공사비가 계속비 예산으로 반영되지 아니한 대형공사를 말한다.(개정 2011.1.1)

②사장은 도시철도공사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대안의 설계의 범위와 한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한다.(개정 2011.1.1)

제91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①사장은 대형공사와 특정 공사(이하 이 조에서 "대형공사 등"이라 한다)의 경우 입찰의 방법에 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45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1.1)

②사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대형공사 등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설계서 작성 전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형공사 등의 집행기본계획서의 작성방법과 제출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 15.10.19.)

1. 기본설계서 작성 전에 일괄입찰로 발주할 공사와 그 밖의 공사로 구분하여 제출 (신설 15.10.19.)
2. 일괄입찰로 발주하지 아니하기로 한 공사 중 대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는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에 제출 (신설 15.10.19.)

③사장은 대형공사 등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영 제9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입찰방법에 따라 입찰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④ 사장은 대형공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신설 2011.1.1., 2015.2.9)

1. 심의대상 대형공사등이 전문성이 필요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자체 심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심의대상 대형공사등이 국가시책사업으로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3. 해당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뇌물수수 등으로 물의가 발생하거나 공정성에 시비가 있어 행정자치부 장관이 사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개정 2015.2.9.)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년 이상 관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2.9.)

⑥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받은 사장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장은 서울특별시장을 거쳐 요청하여야 한다.(신설 2011.1.1., 개정 2015.2.9)

제92조(일괄입찰의 입찰참가자격)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정하여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만을 갖춘 자들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이들의 입찰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설계 등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일 것 (개정 2015.2.9.)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안입찰의 경우 대안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원안에 의한 입찰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요건만을 갖춘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제93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①일괄입찰을 할 때에는 은 기본설계입찰을 실시하여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실시 설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5.10.19.)

②대안입찰자가 원안입찰과 함께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2개 이상의 대안을 제출할 수 없다.

1. 대안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계서류 (개정 2015.2.9., 15.10.19.)
3. 원안입찰과 대안입찰에 대한 단가와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개정 15.10.19.)
4. 대안의 채택에 따른 이점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일괄입찰자는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본설계입찰서의 경우
 - 가. 기본설계에 대한 설명서
 -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계 서류 (개정 2015.2.9., 15.10.19.)
 - 다. 그 밖에 공고로 요구한 사항

2. 실시설계서의 경우
 - 가.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계 서류 (개정 2015.2.9., 15.10.19.)
 - 다. 단가 및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 라.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④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해당 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접수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계의 적격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원안입찰의 경우를 제외한다) 및 설계 접수를 통보받아야 한다. (개정 15.10.19.)

1. 대안입찰의 경우로서 원안설계서와 제9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입찰서를 제출받은 경우 (개정 15.10.19.)
2. 일괄입찰의 경우로서 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 설계서를 제출받은 경우 (개정 15.10.19.)

⑤삭제(2015.2.9.)

⑥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설계의 심의를 할 때 대안입찰서·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첨부된 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2.9., 15.10.19.)

제94조(대안입찰의 대안채택과 낙찰자 결정)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93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대안입찰서의 대안입찰가격(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의 대안입찰가격을 포함

한다)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낙찰적격입찰로 선정한다.

1.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낮을 것
2. 대안입찰가격이 총 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에 대한 입찰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일 것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입찰서에 대하여 제93조제4항에 따라 설계의 적격여부 및 설계점수를 통지받은 때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6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말한다)을 선정한 후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높은 것을 대안으로 채택한다. 다만, 여러 개의 대안공종 중 일부 공종에 대한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공종에 대한 대안공종은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개정 15.10.19.)

③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대안입찰자의 대안입찰서상 해당 공종의 입찰가격을 원안입찰 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해당 공종의 입찰가격으로 대체하여 전체 대안입찰가격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공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채택된 공종에 대한 설계의 일부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수정하게 되는 공종의 입찰가격은 증액할 수 없다.

⑤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안입찰자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 중에서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⑥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거나, 제5항에 따른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15.10.19., 16.9.26.)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 인 공사 :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 (개정 16.9.26.)
2. 제1호 외의 공사 :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방법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입찰일부터 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⑧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조정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 미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1.1.1., 2015.2.9)

[조제목 개정 2011.1.1]

제95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입찰에서 제93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입찰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말한다)을 선정한 후 제43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93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제공고입찰에 부쳐야 한다.(개정 2011.1.1., 15.10.19.)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9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실시설계의 적격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실시 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개정 2011.1.1., 2015.2.9.,15.10.19.)

③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된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계속비 대형공사의 경우 계속비 예산을 초과하고, 일반대형공사의 경우 총 공사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으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하여 그 입찰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쳐야 한다.(개정 2011.1.1., 15.10.19.)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실시설계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⑤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낙찰자결정에서 공사의 시급성이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에게 해당 공사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 설계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지방 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1.1., 2015.2.9., 15.10.19.)

⑥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항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에게 공사를 시행하게 하기 전에 총 공사와 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⑦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총 공사에 대한 최종 실시설계적격통지가 있을 때에는 제6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원래의 산출내역서를 대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래의 계약금액은 증액할 수 없다.(개정 2011.1.1)

⑧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서를 우선 제출하여야 하는 공종의 범위 및 제출기한, 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입찰안내서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 전에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제96조(설계비 보상)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1.1.1., 15.10.19.)

1. 제99조제2항과 제100조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신설 15.10.19.)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에 참여한 자 (신설 15.10.19.)

②제1항에 따른 설계보상비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8.3.20, 2011.1.1., 2015.2.9)

제97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①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도시철도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개정 2011.1.1)

②일괄입찰 시 기본설계 입찰 후 계약체결 이전 과정에서 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보완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개정 2011.1.1)

1. 민원이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의한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개정 2011.1.1., 15.10.19., 16.9.26.)

2. 도시철도공사가 제시한 기본계획서, 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개정 15.10.19.)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1.1.1., 2015.2.9., 15.10.19.)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 제9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개정 2011.1.1)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1.1.1)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제1호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 50/100

3. 제1호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개정 2011.1.1)

제98조(평가)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형공사의 준공검사를 한 후에 평가단을 구성하여 당해 공사의 사업계획·시공과정·실적 및 효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장 계약심의위원회

제99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사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15.10.19.)

1. 제4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기준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

2.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를 결정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의 평가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제88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4. 계약관련 주요기준 및 계약조건 등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

5. 제26조제1항제5호에 의한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경우(신설 10.12.23 개정 12.1.11)
6. 제100조제4항에 따른 재심에 관한 사항(신설 2012.9.7)
7. 규정 제45조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발주하는 공사(신설 2014.6.5.)
8. 구매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14.6.5.)
9. 그 밖에 사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0.12.23., 2014.6.5.)
10. 부대사업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발주하는 수익사업 (신설 15.10.19.)
11. 규정 제43조의2에 의한 입찰자종합평가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16.9.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심의결과를 사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100조(이의신청)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30억원(전문공사 및 기타공사의 경우 3억원),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5억원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는 도시철도공사 사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5.2.9.)

1. 제1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2. 제34조에 따른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3.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②이의신청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사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99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재심청구와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예규)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5.2.9.)

[전문개정 2012.9.7]

제101조(구매기술규격서 사전공개) ① 사장은 철도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물품의 경우 입찰공고시 구매기술규격서를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전공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긴급 또는 비밀물자

2. 조달청 계약의뢰 물품의 경우

3. 해당연도에 연 1회 이상 사전규격 광고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사전공개는 3일 이상이 되도록 하고, 해당 부서의 장이 계약 의뢰 전에 공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조 신설 2014.6.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규정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정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로서 이 규정 시행 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회계규정 “제8장 계약”에 의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회계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0조제1항 중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0조”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로 한다.

제8장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6조 제1항 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69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이행 중인 계약으로서 이 규정 시행 전에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제69조 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 년 12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 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6조제1항제8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제26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조(다른규정 등의 폐지)①계약규정 제31조 제5항 및 제43조 제2항에 따라 예규 제44호와 예규제83호, 예규제78호에 대해서는 관련 예규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이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기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